

# 目 次

1. 書面質問 및 答辯書 \_\_\_\_\_ 70
2. 平昌郡議會 陳情書等處理에 關한規定案 —— 76
3. 平昌郡公有財産管理條例증改正條例案 —— 87
4. 平昌郡地方物價對策委員會設置 및 運營에 關한條例案 \_\_\_\_\_ 94
5. 平昌郡農機械巡廻修理所設置 및 運營條例증改正條例案 \_\_\_\_\_ 100
6. 農業災害復舊費現實化에 關한 建議案 —— 103
7. 陳情書 處理結果 \_\_\_\_\_ 107

# 서 면 질 문 · 답 변 서

- 임도시설등진상과약특별위원회 -

#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주 태 원 의원의 6인	평창군의회임도시설등 진상파악특별위원회
질문대상자	평 창 군 수	

< 질 문 요 지 >

1. 진부면 송정리 산242의 1필지 산림훼손허가를 함에 있어 ,

- 반출증 발급제도는 없으나 반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 허가된 임지내에서 채취된 토사는 용도제한을 두지 않는다고는 하나, 객토용으로 허가된 토사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도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토사가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는등 행정지도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치단체가 허가한 사업장동의 행정지도 필요 여부와, 당해토사가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대책은?
- 허가신청시 허가기간을 '93. 3. 31까지로 신청하였으나 '93. 5. 30까지 2개월간을 연장하여 허가한 경위는 ?
- 당초 허가량에 비하여 상상외로 초과채취되었는데 허가물량과 채취물량을 비교할 때 허가시 설계에 의하여 토사량이 산정 되었음에도 상당량이 초과 채취된데 대한 책임은 설계 잘못인지, 수허가자의 임의초과 채취인지 명확히 밝혀주고 이에 따른 행정지도등 귀책사유는?
- 동 지역에서 채취된 토사가 동해시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해시에 토사가 반출된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반출된 내역및 사용용도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허가관청이 허가지역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내역 및 용도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동허가지역이 국도에서 1000m 이내로 산림훼손 허가시 택지개발된 산림원형이 차폐되었다고 답변 하였으나,  
본회의의 의견은 송정택지개발사업은 90년도에 구상되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사료되고 91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고 추정 되는바,
  -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 및 변경결정고시 일자
  - 택지개발지구 하천부지 양여동 일자
  - 택지개발지구 산림훼손 및 착공일자
  - 객토용 토사채취를 위한 산림훼손 및 착공일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택지개발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산림원형 차폐를 이유로 허가 하였다면 관련법상 하자가 없는지 ?

2. 위 질문사항에 대하여 각항별 소명자료 사본을 각 1부씩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 창 군

우 232-800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0374) 33-6356

문서번호 기획 13130 -446

시행일자 1993. 11. 3

발음 평창군의회외장

참조 사무과장

제목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서 제출

1. 평의회 제120호('93. 10. 27)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서 1부. 끝.

평 창 군



## 보충질문답변서

질문의원명	주 태 원 의원의 6인	답 변 자
질문대상명	임도시설등 진상파악 특별위원회	평창군수 (산림과장)
<p>( 답변사항 )</p> <p>가. 반출사항의 구체적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나 허가용도로 수급여부 파악동행 정지도가 미흡하였음.</p> <p>나. 향후 토석채취허가시는 타용도 사용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 허가권자의 승인 을 득한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하여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 저를 기하겠음.</p> <p>다. 93. 5. 30일까지 연장한 사유는 훼손지복구에 따른 지반정리 등 실제 훼손작 업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설정한것 외는 별다른 사유가 없습니다.</p> <p>라. 토사량 산정을 위한 구적도는 측량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측지기사 2급이상의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본건 측지기사 1급자격자가 작성하였으며, 토사량 수급사항은 별첨과 같음.</p> <p>마. 동해시로 반출된 토사는 총15,000 피이며, 동해시에서 발주하는 도로시설 보조기중용으로 사용 되었음 (토사운반자 : 대신개발 신중호)</p> <p>바. 본 건에 대하여는 별도 자체감사하여 처리하고 결과통보 하겠으며, 택지개발 지구 착공일은 '92.12.24일이며 하천부지 양여일은 '93.3.31일이며 택지개발 지구 산림훼손허가(토사채취허가일)은 '92.11.10일이며, 토사채취착공일은 '92.11.30일임.</p> <p>첨부 : 용도별 수급사항</p>		

각토채취 실적 및 용도별 수급상황

허가내역			채취 및 용도별 수급내역				초과상황		비고
일시	면적	수량	용도	수급처	수량	실지실행자	면적	수량	
92. 11. 10	20,474㎡	121,270㎡	○ 각 토	인근농경지	85,900㎡	김 일 제	1,623㎡	39,630㎡	실제측량결과 구역외채취확은
			○ 운동장 부토	진부국교 운동장	4,000	"			
			○ 매립용	진부쓰레기장	3,000	"			
			○ 방활사용	강릉국도유지	1,000	국도유지사무 소			
			○ 방활사용	고속도로공사	2,000	공사사무소			
			○ 택지개발	진부택지기발 공사	50,000	동 일 건 설			
			○ 도로시설 보조기증용	동해시천국동 대신개발 신 중 호	15,000	김 일 제			
계	20,474	121,270			160,900		1,623	39,630	

## 평창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의안 번호	132
----------	-----

발의년월일 : 1993년 11월 일

발 의 자 : 박 용 태 의원

의 4 인

### □ 제안이유

평창군의회 자체로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진정서 성격의 민원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코자 함.

### □ 주요골자

- 진정인이 의회 의원의 소개없이 의회의장 및 의원,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청원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 산발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수리와 불수리 사항으로 구별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하였음.



## 평창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있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위원의 소개없이 의회의장, 의회위원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청원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등(이하"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촉구문, 성명서 등은 이를 진정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진정서 접수) ①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접수한다.

②의회사무과장이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진정서 처리부 비치)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진정서처리부를 작성, 비치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진정서 불수리사항) ①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회의장 및 의회위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처도록 되어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군사무와 군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6. 지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의회사무과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진정서회부 및 처리) ①의회사무과장은 접수한 진정서를 진정서 처리부에 기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이하"위원회"라한다) 회부

할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②진정서로서 처리가 곤란한 결의문, 촉구문, 성명서 등은 의원에게 배부하여 참고토록 하고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③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진정서 처리부에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2.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하"전문위원"이라 한다)은 회부된 진정서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문의하거나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검토하여 진정서 처리 계획을 작성, 처리한다 (별지 제6호서식)

3. 검토처리한 진정서는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 의뢰한다. 이때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진정서 처리계획을 첨부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④특별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의회 의장에게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위원이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등을 관계기관에 요구한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결재를 받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진정서 처리결과 통지) ①의회사무과장은 특별위원회로부터 통지 의뢰받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의회의장의 결재를 받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회의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통지 의뢰한 진정서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첨부된 진정서 처리계획을 참고하거나 구두 확인 후 수정할 수 있다.

③의회사무과장은 진정서처리 중간 통지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서 처리결과 통지시 의회위원의 의정활동 자료제공을 위해 지역 의회위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미한 사안등의 처리) 의회사무과장은 극히 경미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진정서는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진정서처리결과 배부) 의회사무과장은 매 회기별로 처리한 진정서처리결과를 의원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 ~ 7호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접수증발급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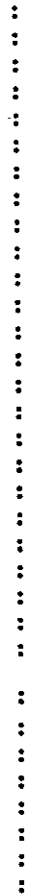
- 일련번호 :
- 건 명 :
- 수 량 :
- 제출자 :

상기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정히 확인함.

199 . . . . .

평창군의회사무과

의사계 (인)



접 수 증

- 일련번호 :
- 건 명 :
- 수 량 :
- 제출자 :

상기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정히 확인함.

199 . . . . .

평창군의회사무과

의사계 (인)



## 진 정 서 처 리(폐기)

1. 접수일 :

2. 진정인 :

3. 사유 :

4. 근거 :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6호

담 당	계 장	전문위원	사무과장

[ 별지제4호서식 ]

# 진 정 요 지 서

접 수 일	19 년 월 일	진 정 번 호	
주 소			
성 명			
전 명			
<u>진 정 요 지 ( 1. 이유 및 경과 2. 요구 사항 )</u>			

[ 별지제5호서식 ]

## 진 정 서 처 리 부

연번	진정 번호	건 명	진 정 인		회부일	검토일 (기간)	통 지 외퇴일	통지일	결 과	비 고
			성 명	주 소						



진 정 서 처 리 계 획			
전 명			진정번호
진정인	주 소		
	성 명		
진 정 요 지			
진 정 조 사 내 용			
처 리 계 획			
특 기 사 항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
----------	-----

제출년월일: 1993. 10. .

제 출 자: 평 창 군



## 1) 제 안 이 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 동일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처분, 관리에 있어서 수의매각범위, 대부료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함.

## 2) 주 요 골 자

- 가.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에 무상위탁관리 (안 조례제5조)
- 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 및 세분화 (안 조례제25조)
- 다.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현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 (안 조례제26조)
-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안 조례제39조의2)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영 제95조제1호"를 "영 제9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등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 잔여면적도 포함)를 등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외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시장·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 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 ----- ----- ----- ----- ----- ----- ----- ----- -----</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영 제95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내지 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영 제95조제2항----- ----- ----- ----- -----</p>

현행	개정 (안)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 기준에 의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u>(신설)</u></p> <p>3. (생략)</p> <p>가. (생략)</p> <p><u>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u></p> <p><u>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u>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u>마. 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u>(신설)</u></p> <p><u>(신설)</u></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 기준에 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u>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u>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u>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p> <p><u>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5분의 1</u></p> <p><u>마. 지하실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u>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p> <p><u>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u></p>
<p>제26조(대부료의 납기)①군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u>30일내에</u>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 ----- ----- ----- ----- <u>60일내</u>-----</p>

현행	개정 (안)
<p>1. (생략)</p> <p>2. 경락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u>30일</u>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u>30일</u>이내</p> <p>㉔(생략)</p> <p>제39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신설)</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60일</u>이내, ----- ----- <u>60일</u>이내</p> <p>㉔(현행과 같음)</p> <p>제39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u>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등권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u></p>



현 행	개 정 (안)
	<p> <u>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u>  <u>단체 소유이외의 건물</u>이 밀집하여 점유  <u>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u>  <u>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분</u>  <u>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u>  <u>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u>  <u>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u> </p>

# 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35
----------	-----

제출년월일 : 1993.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정 호 

## □ 제안이유

현재 내무부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 지방물가관리운영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사항 ( 안 제4조 )

-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물가와 관련된 기관및단체의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함
-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안 제5조 )

### 나.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에 관한사항 ( 안 제3조 )

- 기 능
  -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 조정 할 수 있음
- 심의사항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심의할 수 있음

다.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라.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사항 (안 제8조)

-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함

마.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바.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 처리에 관한사항 (안 제10조)

- 위원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 간사는 물가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

사. 위원의 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사항 (안 제13조)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첨 부

- 평창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평창군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등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8

의안 번호	128
----------	-----

제출자 : 평창군수

정호익 

1. 제안 이유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농기계기동수리 교육시 부품대금만 징수하던 것을 농기계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비를 징수하지 않음으로서 농기계 보유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농기계 기동수리 교육시 부품대금만 징수하던 것을 농기계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하도록 함(안 제5조 단서 신설)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                      한다.                    <u>(단서 신설)</u></p>	<p>제5조(부품대금) . . . . .                      . . . . .                      . . . . . <u>다만, 농기계 기종별로</u>  <u>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u>  <u>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u>  <u>니하고,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u>  <u>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u></p>

# 농업재해복구비현실화에관한건의안

의안 번호	1377
----------	------

발의년월일 : 1993. 11.

발 의 자 : 주 태 원 의원

외 4 인

## 1. 주 문

신한국 창조와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정부당국에 충심으로 성원과 감사를 드립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사회로 비대해져 가는 국가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농촌은 영농인구의 고령화와 U.R협상에 밀려 농민의 땀이 허망되고 있으며, 영농의욕 감퇴로 농업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이의 육성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부 출범이래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1차 산업중 농업분야에 대하여는 농기계 반값공급, 신농정계획의 추진등, 소득기반조성비 지원정책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자연재해인 우박, 냉해, 풍.수해, 서리등 돌발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복구비의 실질적보상은 농업의 경우 10%선으로 농민의 영세성에 비추어 볼때, 재정적 빈곤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재해피해 발생시에는 풍수해대책법 제44조(비용의 부담)및 동법 제46조(국고보조등)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보조및지원)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거 복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보면 농업피해의 경우는 단일작물의 피해율을 적용하지 않고 농가단위 피해율을 적용하므로써 실질적 보상율이 10%선으로 매우 낮고,

그나마 경지면적 1ha이상 소유농가에 대하여는 투자비에 대한 보상기준조차 없는 실정으로 형평성결여를 지적치 않을 수 없으며 그 지원기준을 보면 별지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날로 쇠퇴해가는 영세한 농민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형평성있고, 실질적인 정부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분야의 재해복구비의 현실에 부합되는 지원책을 수립, 항구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줄것을 바라는 6만 평창군민의 뜻을 모아 평창군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 2. 제안이유

- 최근 기상이변으로 우박, 냉해, 풍.수해, 서리등에 의한 농작물 및 시설피해가 날로 급증
- 지금까지 구호차원으로 지원하는 농가단위 피해를 적용을 보상차원인 단일작물 피해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겠으며,
- 현재 지원액이 총 피해액의 평균 10%내외인 것을 피해 전액에 대한 지원과
- 1ha미만 농가위주의 보상기준을 1ha이상 농가로 확대하는등 투자비에 대한 보상지원대책으로 농업재해복구비를 현실화 하여 줄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임.

## 農業災害復舊費現實化에 관한建議文

新韓國 創造와 國民 福祉增進을 위하여 盡力하시는 政府當局에 衷心으로 聲援과 感謝를 드립니다.

급속히 發展하는 産業社會로 肥大해져 가는 國家經濟와는 對照的으로 우리의 農村은 營農人口의 高齡化와 U.R協商에 밀려 農民의 望이 虛妄되고 있으며, 營農意慾 減退로 農業은 自生力과 競爭力을 잃어가고 있어, 이의 育成對策이 絶실히 要求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新政府 出帆以來 大統領 公約事業의 일환으로 經濟的 自立基盤이 脆弱한 우리나라의 1次 産業중 農業分野에 대하여는 農機械 半값供給, 新農政計劃의 推進等, 所得 基盤造成費 支援政策等이 점차 擴大되고 있다고는 하나,

自然災害인 雨雹, 冷害, 風. 水害, 서리等 突發的인 氣象 異變으로 인한 災害復舊費의 實質的補償은 農業의 경우 10%선으로 農民의 零細性에 비추어 불때, 財政的 貧困의 過重한 負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現在災害被害 發生時에는 風水害對策法第44條(費用의 負擔)및 同法 第46條(國庫補助等)와 農漁業 災害對策法 第4條(補助및 支援)의 災害救護 및 復舊費用 負擔基準에 의거 復舊 事業費를 支援하고 있으며,

그 基準을 보면 農業被害의 경우는 單一作物의 被害率을 適用하지 않고 農家單位 被害率을 適用하므로써, 實質的 補償率이 10%선으로 매우 낮고,

그나마 耕地面積 1ha 所有未滿 農家에 대하여만 支援 基準이 마련되어 있을뿐, 1ha以上 所有農家에 대하여는 投資費에 대한 補償基準조차 없는 실정으로 衡平性缺如를 指摘치 않을수없으며 그 支援基準을 보면 별지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平昌郡議會에서는 날로 衰退해가는 零細한 農民의 生計保障 次元에서 衡平性 있고, 實質的인 政府 支援對策이 講究되어야 한다는 判斷下에,

構造的으로 脆弱한 農業分野의 災害復舊費의 現實에 符合되는 支援策을 樹立, 恒久的인 支援制度를 마련하여 줄것을 바라는 6萬 平昌郡民의 뜻을 모아, 平昌郡議會 全體 議員의 이름으로 強力히 建議하는 바입니다.

계촌저수지상수도보호구역지정취소요구

# 진 정 요 지 서

접 수 일	1993 년 11월 4 일	진 정 번 호	7
주 소	평창군 방림면 계촌5리		
성 명	박 천 석 외 16명		
소 관 위 원 회			
건 명	계촌 저수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취소		

진 정 요 지 ( 1. 이유 및 경과 2. 요구사항 )

- '94년도 계촌지구 상수도시설에 따른 상수도 보호구역을 계촌5리 저수지 및 그 유역으로 한다는 여론이 있음.
-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시 관련 주민의 재산상 피해와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음을 해아려,
- 현위치에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수도 수원지를 타장소로 선정 하여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말아주기 바람.



평 창 군

우 232-800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0374) 33-6356

문서번호 기획 13130 - 778

시행일자 1993.11.15

발음 평창군의회외장

참조 사무과장

제목 계촌저수지상수원보호구역지정취소요구에따른처리결과(항후계획)통보

1. 평의회 제125호('93.11.5)와 관련 입니다.
2. 방림면 계촌5리 박 천 석의 주민16인으로부터 계촌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건에 대한 우리군의 처리결과(항후계획)를 붙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붙 임 : 처리결과(항후계획)1부. 끝.

평 창 군



## 처리결과 (향후계획) 통보

- 건의내용 : 계촌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취소요구
- 건 의 자 : 방림면 계촌5리 박 천 석 외16인
-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계촌지역 주민들에게 안정되고 위생적인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일생산량 600톤 규모의 상수도를 '94년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 계촌지역 상수도 시설은 '94년도에 예산이 확정된후 기본설계등을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현지여건, 수질, 수량, 장래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한후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수있는 방법(지하수개발등)을 연구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취수원으로 선정하게 될것입니다.
  - 계촌저수지나 그유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우려하는 주민들의 진정사항은 현재까지는 결정된바 없음을 통보하오니 의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